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 건 번 호 제2022-019-163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울시 송파구

대표자

의결연월일 2022. 11. 30.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법」(2020. 8. 5. 시행, 법률 제16930호, 이하 '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 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 피심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종업원 수(명) |
|------|---------------------|--------|----|----------|
| | | | | |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privacy.go.kr)에 유출 신고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수집현황

피심인은 운영하면서,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고 있다.

< 개인정보 수집현황 >

| 구분 | 항목 | 수집일 | 건수 |
|-------|--------------|-----|----------------|
| 회원 정보 | (필수) (선택) | | (유효) (분리보관) |
| | 합 계 | | |

나. 개인정보 유출 경위

1) 유출 경과 및 대응

| 일 시 | | 피심인의 유출인지 및 대응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유출규모 및 경위

(유출항목 및 규모) 이용자 명의 이름, 주소*

* 동·호수를 제외한 번지수까지의 주소

(유출경위) 피심인이 을 하면서 개발 실수로 이용자가 에 로그인하면 타 이용자의 이름·주소가 조회됨

3.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가.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개선을 위해 안드로이드 이용자 대상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발자가 이용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계정으로만 테스트를 하는 등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 시 타 이용자(명)의 이름·주소(상세주소 제외)가 조회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

* 피심인은 개발자 본인의 계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 이용자 수가 생성 가능한 최대 스레드 (Thread)를 초과하는 환경에 대한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음

4.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 8. 2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2. 11. 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마목)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제2020-5호, 이하 '고시') 제4조제9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중 접근통제)

피심인이 앱을 업데이트 하면서 테스트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 위반행위 | 법률 | 시행령 | 세부내용(고시 등) | | |
|--------|-----|--------|--------------------------------|--|--|
| 안전조치의무 | 보호법 | §48의2① | •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 | |
| 위반 | §29 | 제2호 |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고시§4⑨) | | |

Ⅳ. 처분 및 결정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1. 1. 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해 2회 위반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적용한다.

<「보호법」시행령 [별표2] 2. 개별기준 >

| 위 반 사 항 | 근거법령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 | |
|---|------------------|----------------------|-------|-------|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자.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5조 제2항제6호 | 600 | 1,200 | 2,400 |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2]의 가중기준(▲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위반기간,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한다.

2) (과태료의 감정)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 보호법 제32조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한다.

다.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산출내역 >

| 위반행위(세부내용) | 기준금액 | 가중액 | 감경액 | 최종 과태료 |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접근통제) | | | |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75조(과태료)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11월 30일

부위원장 최 장 혁 (서 명) (서 명) 강 정 화 위 원 위 원 고 성 학 (서 명) 위 원 백 대 용 (서 명) 위 (서 명) 서 종 식 원 염 흥 열 (서 명) 위 원 위 이 희 정 (서 명) 원 위 (서 명) 지 성 우 원